

# 공립어린이집(대화·교대·예초롱)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 안 번 호	422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5. .  
제 안 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 어린이집 3개소(대화·교대·예초롱)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운영자에게 재위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,
-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 및 제16조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에 근거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공립어린이집(대화·교대·예초롱) 운영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# 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) 및 제16조(위탁계약)

#### ○ 추진 필요성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

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범위 :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- 사무내용
  -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
  - 영유아 보육사업 및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
  -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한 사업
  -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

## 라. 위탁시설 개요

시 설 명	시 설 개 요	비고
공립대화어린이집 (수탁자 이부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소재지 : 대화면 우천길 21</li><li>· 시설규모 : 지상2층, 359.58m<sup>2</sup> (정원 65명)</li><li>· 주요시설 : 보육실, 유희실, 조리실, 사무실 등</li><li>· 위탁기간 : 2020. 11. 1. ~ 2025. 10. 31.</li></ul>	
공립교대어린이집 (수탁자 송지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소재지 : 진부면 송정택지1길 37, 성원아파트</li><li>· 시설규모 : 지상1층, 288m<sup>2</sup> (정원 60명)</li><li>· 주요시설 : 보육실, 유희실, 조리실, 사무실 등</li><li>· 위탁기간 : 2020. 6. 1. ~ 2025. 5. 31.</li></ul>	
공립예초롱어린이집 (수탁자 전진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소재지 : 대관령면 대관령로 202-8</li><li>· 시설규모 : 지상2층, 423.39m<sup>2</sup> (정원 58명)</li><li>· 주요시설 : 보육실, 유희실, 조리실, 사무실 등</li><li>· 위탁기간 : 2020. 6. 1. ~ 2025. 5. 31.</li></ul>	

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교대어린이집 : 2025. 6. 1. ~ 2030. 5. 31.
- 예초롱어린이집 : 2025. 6. 1. ~ 2030. 2. 28.
- 대화어린이집 : 2025. 11. 1. ~ 2030. 10. 31.

※ 교육부 “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” p.13

– 재위탁 심사시 기존운영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현운영자 우선 심사 권장

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### ○ 선정방법

- 위탁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실시
-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체(자)를 위탁 선정
-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변경위탁(공개경쟁)으로 추진

### ○ 신청자격

-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및 단체

### ○ 선정기준

- 어린이집 운영계획
-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
- 운영실적 및 공신력, 재정능력 등

## 사. 수탁기관 예산지원 현황 (2024년 기준)

(단위: 천원)

시설명	계	보육료	인건비	운영비	비고
공립대화어린이집	544,156	155,459	329,870	58,827	
공립교대어린이집	622,636	196,098	333,268	93,270	
공립예초롱어린이집	724,567	252,848	380,170	91,549	

## 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### ○ 위탁의 필요성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
-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운영의 안정성, 관리감독의 투명성,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민간위탁 추진이 적합

-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  - 보육교직원의 채용, 보육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상담 및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적합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 -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,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질 높은 공보육서비스 제공
  -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 계약기간동안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우선 보장하여 보육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  - 오랜기간 축적된 보육 관련 노하우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빨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성과 측정의 용이성 및 관리의 투명성
  - 보육통합시스템 활용으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성과를 행정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과 측정이 용이
  -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

## 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추진현황(경과)
  - 2019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선정 : 2019. 11.

- 법인·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장기임차(무상) 계약
  - 교대어린이집 : 2020. 1. 1. ~ 2030. 12. 31.
  - 예초롱어린이집 : 2020. 3. 1. ~ 2030. 2. 28.
  - 대화어린이집 : 2020. 11. 1. ~ 2031. 2. 28.
- 공립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 계약
  - (교대, 예초롱) 2020. 5. 28., (대화) 2020. 10. 30.
  - 위·수탁기간 : 5년 (기존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보장)

○ 향후 추진일정

-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고 및 접수 : 2025. 5. 16. ~
-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개최 : 2025. 5. 23.
-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운영 계약체결 : 2025. 5. 29.
-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행 : 2025. 6. 1. ~

○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
-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영유아 보육법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⑦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

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
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,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경 사유서

2.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

**제14조(위탁운영)**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5조(수탁자 선정)**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16조(위탁계약)**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,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